

계 시 관

■ 고 시

- 자가사용목적기기로서실수요자가형식검정 · 형식등록을신청할수있는무선기기
- 전자파장해방지기준
- 전자파보호기준
-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
- 전자파보호시험방법
- 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
- 적합등록대상기기중신고하고사용할수있는 기기
- 전자파적합등록기기에대한변경신고의범위 및절차
- 지정시험기관이갖추어야할측정설비및사무 실등
- 대상무선설비및확인증명수수료
- 무선설비확인증명의검정방법및합격기준
- 측정장비의확보기준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38 호

자가사용목적기기로서실수요자가형식검정 · 형식등록을신청할수있는무선기기

(고시일 1997. 6. 30)

가. 대상기기 : 이동공중무선전화장치(차량용 및 휴대용
으로서 수입기기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1 호

전자파장해방지기준

(고시일 1997. 6. 30)

제 1 조 중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
칙”으로 한다.

제 2 조 중 “장해검정대상기기”를 “적합등록대상기기”
로 한다.

제 3 조제 1 항제 4 호 중 “비 업무용기기”를 “가정용기
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2 호

전자파보호기준

(고시일 1997. 6. 30)

제 1 조 중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
칙”으로 하고, “전자파내성기준(이하 “내성기준”이
라 한다)”을 “전자파보호기준(이하 “내성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 조 중 “장해검정대상기기”를 “적합등록대상기기”
로 한다.

부칙 중 제 3 항(의료용구에 관한 적용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 - 43 호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

(고시일 1997. 6. 30)

제 1 조 중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칙”으로 하고 “제 9 조제 3 항”을 “제 9 조제 2 항”으로 한다.

제 2 조 중 “장해검정 대상기기”를 “적합등록 대상기기”로 한다.

제 6 조제 1 항 중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별표2의 감쇠이론값으로부터 ±4데시벨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 21 조제 3 항 중 “검정”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 대용시험장의 전자파감쇠 특성”을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 - 44 호

전자파보호시험방법

(고시일 1997. 6. 30)

제 1 조 중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칙”으로 하고, “제 9 조제 3 항”을 “제 9 조제 2 항”으로 하며, “전자파내성시험방법”을 “전자파보호시험방법”으로 한다.

제 2 조제 1 항 중 “장해검정 대상기기의 내성시험(이하 “내성시험”이라 한다)”을 “적합등록 대상기기의 보호시험(이하 “내성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 - 45 호

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

(고시일 1997. 6. 30)

제 7 조 중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칙”으로 하고, “제 2 조제 3 호”를 “제 2 조제 2 호”로 한다.

부칙 제 2 항 중 “최초로 제작하거나 수입(“물품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새로운 모델의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물품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기기”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추가된 기기중 '97. 6. 30 이전에 제작된 기기는 '97. 12. 31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 3 항 중 “검정”을 “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 - 46 호

적합등록대상기기중신고하고

사용할수있는 기기(고시일 1997. 6. 30)

제 1 조(목적) 전자파적합등록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중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가사용”이라 함은 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수입하는 기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 영리단체가 단체명의로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 3 조(용도별 신고 대상기기와 수량) 용도별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적합등록 대상기기의 세부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기
 - 대상기기 : 워드프로세서, 퍼스날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 수 량 : 1대
2.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기
 - 대상기기 : 워드프로세서, 퍼스날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 수 량 : 5대이하
3. 전시용 또는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기
 - 대상기기 :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유선통신 단말기(형식승인 대상기기 제외)
 - 수 량 : 5대이하

제 4 조(신고 및 처리) ① 제 3 조의 신고 대상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수입기기확인신청서” 1부를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1대 이상의 자가사용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5대이상의 전시용 및 성능평가용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사용처·사유 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외국 기술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전시용 또는 성능평가용의 경우에는 수입기기확인신청서의 “용도”란에 용도와 사용 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시용 또는 성능평가용의 경우에는 사용 만료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확인을 받은 기기의 처분사실을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7 호

전자파적합등록기기에대한변경신고의범위및절차

(고시일 1997. 6. 30)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파적합등록규칙 제 12 조제 1 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록기기에 대한 변경신고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등록기기에 대한 변경신고의 범위) ① 등록기기가 방지기준 및 내성기준의 범위안의 변경으로서 소장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기기의 내부 구성품의 재 배치, 동등 성능 이상의 회로소자 대치 또는 일부 소자의 추가나 삭제로 인한 변경
2. 구성품으로 등록을 한 카드류의 추가 또는 대치로 인한 변경
3. 등록 대상이 아닌 구성품 등의 추가, 대치 또는 변경
4. 다수의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동일한 기능의 단일 칩으로 고집적화하는 변경
5. 형식이 다른 구성품과 등록기기의 구성품을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6. 사용 전압의 변경
7. 제조 국가의 변경

② 등록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으로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변경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외함의 경미한 형태 변경
2. 형식명·상표·레이블 등의 크기·색상·표시 위치 변경 또는 기기의 색상 변경

③ 등록된 하나의 기기가 시리즈별로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 경우와 외형은 동일하나 내장구성품과 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소장에게 변경신고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기기가 다수의 동일한 프로세서, 입출력장치 또는 부가장치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된 수량 범위 내에서 재 구성하는 변경
2. 주 기억장치 또는 보조 기억장치 등의 용량을 등록 기기의 용량보다 줄여 사용하고자 하는 변경
3. 기본 성능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기능의 구성품을 철거하는 변경

제 3 조(변경신고 절차) ① 별지1호 서식의 “전자파적합 등록기기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입증자료 1부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2 조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시험성적서, 변경 전후 사진
2. 제 2 조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 전후 사진
3. 제 2 조제 3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 전후의 수량·용량 또는 철거품의 명세서와 외형 사진

② 소장은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8 호

**지정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측정설비및사무실등**(고시일 1997. 6. 30)

제 1 조(목적) 전자파적합등록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17 조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 및 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측정설비) 규칙 제 17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는 다음과 같다.

측 정 설 비 명	수량(대)
1. 전계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
2. 공중선	
가. 다이폴	1
나. 바이코니칼 및 대수주기	각1
3. 회전시험대	1
4. 공중선 마스트	1
5. 전원선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망	1

제 3 조(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등) 규칙 제 17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2. 신청인은 전파법이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한 자 일것
3. 규칙 제 17 조제 2 호의 시험요원 3인이상외에 행정요원 1명이상과 사무실을 별도 보유할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49 호

대상무선설비및확인증명수수료
(고시일 1997. 6. 30)

대 상 기 기	1대당 수수료
○ 이동가입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2,500원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8,000원

부칙

이 고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50 호

무선설비확인증명의검정방법및합격기준

(고시일 1997. 6. 30)

검 정 항 목	검 정 방 법	합 격 기 준
1. 주파수허용편차	송신상태로 대상기기를 동작시켜 공중선으로부터 고주파 신호를 받아 반송파의 주파수가 안정될 때 주파수측정기로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3조, 제104조의2 및 제109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
2. 점유주파수 대폭의 허용치	통상상태에서 송신장치의 출력단에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기타의 방법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을 측정하여 허용치 이내인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4조, 제104조의2 및 제109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
3. 스푸리어스발사 강도의 허용치	통상상태에서 송신장치의 출력단에 전계강도측정등으로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과 스푸리어스의 전력과 비를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5조, 제104조, 제104조의2 및 제109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
4.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무선설비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중 수검설비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통상상태의 평균전력을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16조, 제104조의2 및 제109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
5. 변조도 및 주파수 편이의 허용치	수검설비 송신장치의 입력단에 1,000Hz 및 3,000Hz의 변조 신호를 가하고, 송신장치의 출력단에서 주파수 편이계등으로 측정하여 허용치내 인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20조, 제104조, 제96조, 제104조의2 및 제109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
6. 부차적 전파의 한도	수신공중선으로부터 부차적으로 복사되는 전파의 크기를 스펙트럼 분석기등으로 측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비 고

1. 검정은 원칙적으로 상온(20±15℃) 및 상습(65±20℃)의 상태에서 정격전원전압 조건하에 작동시킨후 1분이상 경과한 다음 통상사용 상태에서 실시한다.
2. 수검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당해 설비의 사용주파

수대의 상한·중앙 및 하한의 각 주파수에 대하여 확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합니다.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7-51 호

측정장비의확보기준

(고시일 1997. 6. 30)

증명장비명	보유량	주요기능
1. 자동측정시스템	1식 이상	1. 모든 수검설비의 성능심사 항목에 대하여 자동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2. 주파수측정범위 : 100Khz~2Ghz 3. 출력측정범위 : 0.1W~100W
2. 스펙트럼분석기	2대 이상	1. 주파수 범위 : 10Khz~2Ghz 2. 대역분해능력 : 10Hz~3Mhz 3. 영상분해능력 : 1Hz~3Mhz
3. 송수신측정기	5대 이상	1. 다음의 기능을 가질 것 가. 변조도 및 주파수편이 측정기능 나. 신호발생기능 다. 주파수 및 출력편차 직독기능 라. 신호대 잡음의 정도 측정기능 마. 수신부 동작상태 및 감도측정기능 2. 주파수 범위 : 100Khz~2Ghz 3. 출력측정범위 : 0.1W~50W
4. 주파수측정기	7대 이상	1. 주파수측정범위 : 100Khz~2Ghz 2. 분해능력 : 1Hz
5. 고주파측력계	7대 이상	1. 주파수측정범위 : 100Khz~2Ghz 2. 전력측정범위 : 0.1Hz~50W 3. 출력지시범위 : 소숫점 두자리 이상

※ 비고 : 측정장비의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적의 기능을 가진 측정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합니다.